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9호, 2009. 5. 1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가소제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염화비닐수지(PVC)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제7. 2. 1. 1-1]

- (1) 합성수지제의 유연성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가소제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규격이 필요함.
- (2) 염화비닐수지제에 대해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 (3) 식품용 기구로 사용되는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증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0호, 2009. 5. 1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관리체계 도모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 안전성에 관한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

위 및 작성요령 중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2).

나.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신설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2호, 2008. 8. 27)함에 따라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삭제함.

및 작성 요령 중 일부 자구 수정함(안 별표 2).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1호, 2009. 5. 1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 내포장된 개별제품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중 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에 따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이중 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강화(제5조제1호 및 제5조제3호라목)

(1) 최근 학교 앞 등에서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과자류, 초콜릿류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표시의무가 없는 내포장 제품을 임의대로 포장을 뜯어 분할·판매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이중 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2)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하되, 그 내용물이 개별 포장된 경우에는 그 개별포장의 포장 면적이 30cm² 초과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 내용량 및 영양성분 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3) 내포장 제품에도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기대

나.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사진 등 이미지 및 “맛”자 사용금지(제7조제3호 및 별지1 제1호 가목1)다)(3))